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1 - 300호

시행일자 2021. 7. 8.

수 신 협회 회원사 대표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관리 철저 요청

1. 건설공사와 국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회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 사고는 최근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모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 시에 건설안전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이하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이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이하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 2021.6.29 시행)을 개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건축주 등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가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점검 횟수와 대가가 없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용역계약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점검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3항에 명시한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위탁이 가능하며 첨부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협회는 타워크레인 점검을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무요령’ 을 작성 중에 있으며 완료 후에 초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바, 점검 시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침’ 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철저히 준수 여부.

(1) 점검 실시는 타워크레인 1기당 기준임.

(2) 타워크레인 마스트 인상(텔레스코핑) 시마다 점검을 실시.

예) 25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점검 횟수

- 설치 시(10층까지) 1회
- 인상 시(10층부터 3층마다 실시) 5회
- 해체 시 1회

계 7회 / 1기당

(3) 타워크레인 점검 대가는 설치 시 외업(안전점검책임기술인 1인, 검사원 1인) 2일 + 내업 1일 이상, 해체 시 외업 3일 + 내업 2일 이상을 반영하여 ‘지침’ 제47조 5항에 따라 산정하여 발주.

(4) 타워크레인 인상 시 점검대가는 관계기관과 회당 1.2백만 원으로 책정, 협의 한바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부실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발주.

나.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시 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9조 3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목1) 또는 2) 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점검을 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안전작업계획서’ 를 사전에 작성 여부.

라.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작업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로 6인 이상을 한 팀으로 구성 여부.

마. 설치·인상·해체 전에 특별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여부.

- 첨 부 :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2)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방법 1부.
(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검사원 자격요건 1부.
(4)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위탁수행 1부.
(5)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현황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